

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544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군립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자연공원법 제26조 제3항
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

4. 본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제6항 다음에 “제7항” “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” 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17조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) ①~⑥ 생략	제17조(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)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.